

의안번호	2209306
의 퇴 인	최형두의원
회 답 일	2025. 7. 1.
추 계 번호	25B1841

디지털크리에이터(1인 미디어 창작자)산업 진흥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재원의 확보)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정부는 예산,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5조(교육훈련 지원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및 디지털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
		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6조(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)	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
		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이 제작·유통·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7조(창업 및 사업화 지원)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1.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 창업자 발굴 및 육성·지원 등에 관한 사업 2.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에 관한 사업 3.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등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사업화 지원 4.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.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	재량규정
5	안 제8조(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융합의 촉진)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융합 서비스 등의 연구·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·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9조(해외진출 지원)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1.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2.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.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국제행사 참가 지원 4. 방송·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·홍보활동 5.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0조(금융 지원)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,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,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·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,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, 관련 사업자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할 수 있음(제2항)	
8	안 제11조(시범사업의 실시)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
		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, 지원,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
9	안 제12조(작업환경의 개선 지원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작업 환경 조사, 법률·재정 자문 지원 등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3조(실태조사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1	안 제14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		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2	안 제15조(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지원 센터의 지정 등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(제2항) 1.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.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경영·법률·세무 등의 상담 3. 디지털크리에이터 간의 교류활동 지원 4.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5.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지원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3	안 제16조(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)	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1.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 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·개발 성과의 확산 2.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3.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14	안 제17조(유통환경)	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크리에이터등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5	안 제18조(상생협력 촉진 등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 상호이익의 증진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	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3항)	
		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16	안 제19조(협약체결 의 권장 등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관계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·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·의무 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. 다만, 공표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
		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, 체결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7	안 제20조(상생협력 기여자 선정·지원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기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,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18	안 제22조(표준계약 서의 제정·보급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,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등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제21조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등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19	안 제25조(권한 등 의 위임·위탁)	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 중 다음 각 조항은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행 예산사업이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으로 인한 사업의 확대나 사업 방식의 변경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향후 예산 규모의 변동을 추계할 수 없음
 - 안 제5조·제6조·제7조·제8조·제9조·제12조·제13조·제15조·제16조·제22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 및 2025년 예산		
1	안 제5조(교육훈련 지원 및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	(단위: 백만원)		
	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	방송콘텐츠 진흥 (1131-301) (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) (전업·신직업 육성)	전업 크리에이터, 신직업 등 미디어 산업을 이끌 혁신 인 재 발굴·양성	2,650
2	안 제6조(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)	(단위: 백만원)		
	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	방송콘텐츠 진흥 (1131-301) (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) (전업·신직업 육성)	전업 크리에이터, 신직업 등 미디어 산업을 이끌 혁신 인 재 발굴·양성	2,650
		1인 미디어 복합플렉스 조성 (1131-320) (복합플렉스 운영)	크리에이터 및 스타트업 대상 제작시설, 입주공간 등 특화 인프라를 지원하여 미디어 신산업 육성 및 창·취업 활성화	4,157

연번	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 및 2025년 예산		
3	안 제7조(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)	(단위: 백만원)		
	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	방송콘텐츠 진흥 (1131-301) (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) (IP 경쟁력 확보)	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우수 IP 확보 및 해외진 출용 현지화 재제작 지원 을 통한 글로벌 판로 확대	900
4	안 제8조(디지털크리에이터산 업 융합의 촉진)	방송콘텐츠 진흥 (1131-301) (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) (기반조성)	산업 행사 개최, 조사연구 실시 등 긍정적 크리에이 터 미디어 산업 문화 확산	800
5	안 제16조(디지털크리에이터미 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)	1인 미디어 복합체 조성 (1131-320) (복합체 운영)	크리에이터 및 스타트업 대상 제작시설, 입주공간 등 특화 인프라를 지원하여 미디어 신산업 육성 및 창·취업 활성화	4,157
6	안 제9조(해외진출 지원)	(단위: 백만원)		
	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	방송콘텐츠 진흥 (1131-301) (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) (전업·신직업 육성)	전업 크리에이터, 신직업 등 미디어 산업을 이끌 혁신 인 재 발굴·양성	2,650
7	안 제12조(작업환경의 개선 지 원)	방송콘텐츠 진흥 (1131-301) (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) (IP 경쟁력 확보)	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우수 IP 확보 및 해외진 출용 현지화 재제작 지원 을 통한 글로벌 판로 확대	900
		(단위: 백만원)		
		사업명	사업개요	2025
8	안 제13조(실태조사)	방송콘텐츠 진흥 (1131-301) (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) (기반조성)	산업 행사 개최, 조사연구 실시 등 긍정적크리에이 터 미디어 산업 문화 확산	800
9	안 제22조(표준계약서의 제정· 보급)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 및 2025년 예산		
10	안 제15조(디지털크리에이터 지원센터의 지정 등)	(단위: 백만원)		
		사업명	사업개요	2025
		방송콘텐츠 진흥 (1131-301) (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기반 조성) (기반조성)	산업 행사 개최, 조사연구 실시 등 긍정적크리에이 터 미디어 산업 문화 확산	800
		1인 미디어 복합플렉스 조성 (1131-320) (복합플렉스 운영)	크리에이터 및 스타트업 대상 제작시설, 입주공간 등 특화 인프라를 지원하여 미디어 신산업 육성 및 창·취업 활성화	4,157

□ 제정안 중 다음 각 조항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재함

○ 안 제4조(재원의 확보)

-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인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

○ 안 제10조(금융 지원)

-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및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·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자금 융자·지원·보증 대상 및 규모,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

○ 안 제11조(시범사업의 실시)

-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,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시범사업의 내용 및 규모,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

- 안 제14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
 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,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, 규모, 필요인력, 사업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음
- 안 제17조(유통환경)
 -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,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가 행동강령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지원대상 활동, 지원 기준 및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
- 안 제18조(상생협력 촉진 등)
 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 상호이익의 증진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거나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상생협력 촉진 및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협의체의 형태·규모 등을 알 수 없음
- 안 제19조(협약체결의 권장 등)
 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관계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·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,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협약의 내용, 체결절차, 지원 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종류 및 방법 등을 알 수 없음

- 안 제20조(상생협력 기여자 선정·지원)
 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, 제정안은 상생협력 기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, 지원 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상생협력 기여자에 대한 지원 시책의 종류 및 방법 등을 알 수 없음

- 안 제25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
 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위탁할 경우 업무 위탁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업무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기관, 위탁 범위 등을 알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